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·공포(2007. 1. 2 조례 제641호)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수관리팀의 소속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되어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항 내용 중 교통지도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되었으나, 조직개편 이후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, 2007. 2. 15 운수관리팀 소속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교통지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원회 부위원장 명칭 변경(안 제3조제2항)

운수관리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지도과장”으로 개정.

### 나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

### 3. 개정근거 :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(별표1-사무분장표)

#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6. 기타사항

#### (1) 입법예고 생략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호에 의거

#### 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지도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</u> 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기능) (생략) 1.~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</p>	<p>제2조 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</p>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위원장은 <u>건설교통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교통행정과장</u>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1.~4.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은 <u>건설교통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교통지도과장</u>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1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임기) ① (생략) 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